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최 상 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I. 머리말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연도 전년도 7월 31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국가재정과 관계, 지역 간 · 단체간의 균형유지 등 제반예산편성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은 지방재정을 지도 ·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도록 한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여 반드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통합성을 확보하면서 반면 지역특성의 반영과 공공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지역적 독립성이 확보 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운영의 구체적 수단인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지방예산이 국가재정 및 국가 주요시책 방향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결적 가교역할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은 중앙으로부터 32%를 지원받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30%미만이 106

개단체(43%), 50%미만이 194개단체(78%)가 되는 등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법정경비외의 국가와 지방공무원간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무원 관련경비 그리고 지역간·단체간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기관운영경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제시하는 비목에 대하여는 상한선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개선하면서 예산운영과 재정적 인센티브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의의, 지방재정 운영여건 및 기본방향, 지침의 구성내용과 지침의 변천과정(개선사항),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수립관련 의견수렴 내용 및 검토·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I. 2001년도 지방재정 운영여건 및 기본방향

1. 지방재정 운영여건

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

민선자치시대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1년도를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국가재정의 세입증가추세(6%)에 힘입어 지방세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 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지역경제진흥, 지역성장 부존자원 개발, 지식·정보화 구축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교육재정 추가지원, 생산적 복지확충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2002년 월드컵행사 준비, 지하철건설, 지역 SOC 등 시설 마무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다.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

국가재정의 긴축운영과 연계 지방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을 추진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정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국가경제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채무감축 노력과 함께 지방채무의 감축, 기금 등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 필요

지방세입의 확충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분을 지방채무의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재정구조의 건실화·안정화를 도모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장기 미활용 기금의 생산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계속증인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지역간·단체간 재정의 균형과 조화유지 등 전략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시점

미완공 계속사업의 방치시 매몰비용의 발생 및 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재정낭비·부실화 방지를 위한 전략적인 재정운영이 요청되고 지역간·단체간 유사사업의 경쟁적시행, 중복투자의 방지 등을 위해 광역단위 재정협력 체제 구축의 적정한 안배가 요구된다.

바.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의 진전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노력 추진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유도과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선심성·행사성경비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와 연계한 재정관리제도로 정착, 발전적 운영이 요청된다.

2.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지금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

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시 선심성·행사성경비의 억제
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재원의 배분시 지역안배식 소규모분산투자
(Pork Barrel)를 지양하여 투자효과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재정의 성장잠재력을 감안 『先 재원의 조달, 後 투자수요 창출』의 안정적 재정운영
이 요구되고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 선심성·행사성·소규모분산투자 등 재정의 건전
성 측정기법을 제도화하여 200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채무관리 개선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채무감축노력을 강구하기 위
해 순세계영여금의 일정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운영하여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부담
을 경감시키고 지방채 발행승인시 향후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범위
내 운영토록 조치할 것이며 지방채 상환비 비율 증가 등 채무구조 악화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상예산·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의
10% 높이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점증적·반복적 예산편성 기법에서 탈피, 새로운 재정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하고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감축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시
부터 적극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나. 미래의 투자에 대비 전략적 재정운영

2001년도 지방세입의 확충이 미래 지방자치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발전지향
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지방세 징수,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지식
정보화·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 투자하고 미래투자자 관련 자치단체간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경합, 기존사업의 무용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 재정운영의 광역단위·단
체인 협의·협력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재정투자수요에 대처하고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를 추진하기 위
해 미완공·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투자재원 소
요판단 등을 실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추진시 매몰비
용과 향후 투자효과 등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다. 국가정책 및 국제행사의 적극적 지원체제 강구

당면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완벽한 재정지원으로 월드컵개최 도시 및 광역단체의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투자사업비의 차질없는 부담 및 지원으로 경기개최와 관련 도시기반 시설확충,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환경정비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과 사회전반의 관리시스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지방예산·회계의 정보관리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과 재해·재난의 완벽한 대비

저소득주민·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고 사회복지 확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 환경친화적 여건조성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상습재해·재난시설의 개량을 위한 투자확대가 요청되고 광역적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협력기능 강화 및 계획적 시설설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적극 보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중기재정계획이 장래 3개년의 재원배분의 기초가 되는 다년도 예산편성체도로 운영되므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국고보조 신청사업,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의 실효성있는 정착이 필요하다.

제반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결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시키고 투융자심사시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집행결과 결산내용이 차기 재정운영에 환류(Feed Back)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의 조기실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 관리시스템의 정착노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바. 지방예산·회계의 생산성·투명성 확보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은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Out

Sourcing) 방식』으로 시행하여 감량경영을 유도하고 예산절감시책의 적극발굴 및 시행으로 『과급효과(Spill-over effect)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제도의 개선으로 부서(국 또는 과단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운영의 내실화와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여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관리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며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일몰법』제도 도입 운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주민의 예산편성 내용 및 집행결과의 공개요구 등 알권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적극 개선·보완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측정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외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관리제도를 도입 할 계획이다.

Ⅲ.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내용과 변천과정

1.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내용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실질상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침의 의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의 현실과 환경을 기초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목표와 실천기준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변천을 거쳐왔다.

지침의 최초시달은 지방재정법이 공포·시행된 60년대로 추정되며 지방의회가 구성된 '91년도 이전에는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승인함에 따라 지침의 성격이 예산편성의 정보제공, 심의의 기준 및 안내서로써의 역할이 강조되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통제·규제적인 성격을 면치 못하였다.

'91년 지방의회 구성이후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지방의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의회의 예산심의의 자율성 확대와 '95년이후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예산편성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침의 시달이 자치재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침의 작성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자치단체에서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97. 12월 행정쇄신위원회 및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침작성권의 지방이양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나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차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속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선자치 이력이 더해가면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자주재정력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등 자구노력이 한층 강화되는 노력속에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행사·축제·선물제공 등 선심성·낭비성 재정운영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지방의회, 국회, 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98년말 IMF의 국가적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 부채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과 책임을 조화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예산통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편성과목의 구분과 설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2조(예산의 구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예산의 과목구분)에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 있어 『국가와 지방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와 『회계책임 명확』 및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과목의 설정내용에는 예산편성기준과 방법·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설정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는 자치단체가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사업우선순위, 투자효율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

으며 이에대한 법적근거는 각종 개별법령 및 보편적인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재정질서의 확보 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민선자치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선자치이후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집행에 따른 감사원 및 국회·사회단체·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중앙의 과도한 통제라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2.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천과정(개선사항)

가. 1996년도 개선사항

'95년도까지는 조직중심으로 운영되어 예산분석이 어려웠으나 '96년도 예산부터 일 반회계 전산프로그램의 전국적인 보급·운영으로 예산분석이 용이하게 되었다.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능률성의 향상 과 인력의 절감 등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예산편성결과의 집계·분석이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예산 일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사업예산과 관련 된 단위단가 등은 지침에서 제외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게 되었다.

○ 세입예산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 세출예산

<세출과목구조>

장·관	——	기능별 분류 : 5개장 16개관	
항	——	행정기관별 분류 : 31개항	
세 항	——	자치단체별, 행정조직별 분류 : 132개 세항	
세세항	┌	대분류(4) :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	소분류(16) : 인건비·기준경비·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경상예산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금사업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상환	채무상환
예비비·기타	예비비등
목	성질별 분류 : 35개목
세 목	내용별 분류 : 77개목

나. 1997년도 개선사항

예산편성기본지침이 통제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96년도 지침에 사업예산 일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한데 있어 '97년도 지침에는 경상경비의 경우에도 여비·수용비 등 40여개 비목별로 예산편성기준이나 방법을 제시 하던 것을 국가와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8개 경비에 한정하여 상한선을 제시하고 그외의 경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므로써 경상경비에 대하여도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기준제시 8개경비 >

- | | | |
|--------------------|----------|------------|
| ①복리후생비 | ②업무추진비 | ③월액여비 |
| ④일숙직·강사·시험·위원회참석수당 | ⑤급량비단가 | |
| ⑥지방의회관련경비 | ⑦사회단체보조금 | ⑧통·리·반장활동비 |

예산과목구조도 지방자치단체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과목중 조직과 관련된 과목구조인 『세항』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도록 위임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 선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제시하였다.

-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공무원 관련경비의 적정집행
-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금지, 상용인부 증원억제

· 해외증여 및 투자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투·융자심사후 시행 등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의 도입으로 인력감축, 경상경비절감, 지방세 징수노력 등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감안, 교부세 산정에 반영토록 하였다.

다. 1998년도 개선사항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기준을 정한 『기준경비의 동결』로 기관운영·시책추진·직책급여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활동비 등 지방의회 의원 관련경비의 기준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 절감을 꾀하도록 하였다.

예산과목 구조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 조직단위 과목인 “항”의 설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였다.

선심성 예산집행 등 방지를 위한 보상금과목을 12개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기준을 제시하면서 격려·위문 등 업무추진비, 의정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기념품구입비 등은 계상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본회의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활동비로만 집행토록 하고 개인의 의정홍보 및 연구활동 등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업무추진비의 월별 균형있는 집행 및 내역의 사후정리 등 투명성을 확보토록 상반기에는 총기준액의 1/2이상 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비율을 조정(감사원 지적사항)하여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비율을 현행 25 : 75에서 50 : 50으로 하향시켰다.

공무원 사기진작경비는 정원가산금에서 집행토록 하면서 직원체육대회, 동호인취미 클럽,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집행토록 명문화 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는 보도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1999년도 개선사항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경제상황과 지역특수요인 그리고 전년도 지방세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은 제시하되 최소화하고 기준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였다.

기준제시 경비는 현행 8개 비목에서 7개 비목으로 축소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실정이 다를 수 있는 월액여비는 자치단체 조례제정 후 자율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40개 비목을 36개 비목(4개비목 축소)으로, 118개 세목을 78개 세목(40개세목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선심성, 사적용도, 구분이 명확치 않은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와 통합하되 25% 범위내에서 현금지출이 가능 (찬성 73% 180개단체, 반대 27% 68개단체)토록 하고 모든경비의 집행시는 반드시 지출증빙서류 또는 지출내역을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99년도부터는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을 분석후 공개를 제도화시켰다.

통합재정기능 강화로 재정위기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산, 채무, 기금 등을 총망라한 통합재정 측면에서 『재정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금까지의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였고 주요재정사업에 대해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을 위해 세항의 조직별 분류에서 사업목적별 분류로 전환하여 철저히 평가 관리토록 하였다.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의 전환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계속비 제도, 명시이월비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특별회계, 기금, 출자금, 출연금 등 특정목적으로 별도관리하는 자금에 대하여서는 『일몰법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5년이내의 종기를 설정, 사업효과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마. 2000년도 개선사항

IMF경제 회복기간중임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활동비 등 경상경비의 기준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운영토록 하였고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운영 방식을 위한 주요경비별 예산편성·집행지침을 신설하여 제시하였다.

업무추진비는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지출하되 총액의 30%범위내 지출하고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의정운영공동경비는 의원 개인명의로 의정활동(홍보물 제작 등) 경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는 업무추진비적 경비 등으로 정하면서, 장학금 · 학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공공성 ·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 ·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홍보관련경비는 홍보물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하고 신문 · 방송 · TV 등을 통한 광고는 행정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행사비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를 자제하고 경비부담은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토록 하면서 공공기관 시설이용으로 행사장 임차 경비를 절감하게 하였으며, 전야제 행사 등 부대행사를 지양하고 행사기념품의 제작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제토록 하였다.

용역비는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 등 경비절감방안을 우선검토하여 외부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고, 민선단체장의 치적홍보(업적과시)를 위한 여론조사나 단순한 행정홍보 등을 위한 용역은 지양시켰다.

국외여비는 해외출장시 외국의 주재관 또는 현지기관등을 통한 출장목적달성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단순 시찰을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 교육인של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초청장 없는 세미나 · 회의참석 등을 지양시켰다.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지급대상을 일선소방관서의 과장급이하로 확대(현행은 업무담당자에 한해 지급)하였으며 일선소방서의 담당과장도 현장 출동지휘, 상황관리 등 실질적으로 구조구급 및 방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해 시 ·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과장급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감사 · 세무 · 예산 ·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의 경우도 지급대상이 과장급이하로 되어 있음)

서울지역사무소 근무자의 직급보조비 지급범위를 확대(현행은 서울사무소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여 시 · 도 직제상 공식조직으로 되어있는 서울지역 소재사무소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급토록 기준을 보완(『투자유치기확단』 등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다.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는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3.2%)을 주행세로 지방세원화 함에 따라 『주행세』 목을

신설하였고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 도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목도 신설하였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99. 6. 30)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세목을 신설하였고 설게비·보상비와 함께 시설비 세목(401-01)에 포함되어 있던 『감리비』를 세목으로 독립시켰다.

IV.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수립 관련 의견수렴 내용 및 검토·조치사항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침의 운용자인 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기초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별 자치단체별로 제출된 의견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전체적 의견을 재수렴하고 시·도 예산계장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토의를 거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였다.

1. 예산편성기본지침 분야

의 건 수 려 내 용	검 토 및 조 치 사 항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	
①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통합	○ 경비용도가 서로 다르므로 통합곤란하고 ○ 통합시는 기관장이 조직운영경비로 대부분 사용할 우려
②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범위를 30%에서 50%로 상향조정	○ '99년 6월부터 25% → 30%상향조정
③ 시도, 자치구의 5급사업소장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대상에 추가	○ 시·도 5급사업소장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하면 시·도 4급과장에게도 지급해야 함
④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상향조정 - 인구3만 미만 : 4,800→5,000천원 - 인구3만 이상 : 6,000→10,000천원	○ 서기관이 읍·동장인 읍·동은 별도기준 적용(인구 8만이상 : 연 7,200천원)

의 건 수 량 내 용	검 토 및 조 치 사 항
⑤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군적용 기준표 재조정(영천시 나群→가群)	○ 동기기준표는 인구·공무원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를 종합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특정시에 대하여 특례인정곤란
⑥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군적용 기준액 상향 조정 또는 가·나群 폐지	○ 지방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여건상 인상은 곤란함
⑦농업기술센터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상향조정 - 연3백만원→16백만원(부군수의 50%)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	
○ 지급기준액을 상향조정 - 20인이하 (월) : 200 → 300천원 - 1인초과시단가 : 1인당 5 → 1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등급기준을 15인이하 월 200천원, 30인이하 월 300천원으로 조정하면서 31인초과 1인당 5천원 가산(248개 단체 중 232개 단체가 희망)
3. 직급보조비·직책급여업무추진비 관련	
①낙동강환경감시대에 파견된 직원도 직급보조비(월 30만원)지급	○ 근무부서별로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없음
②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지급범위 확대 - 시·군 서울사무소(주채소)도 지급대상에 포함	○ 시·도 직제상 공식조직으로 되어 있는 서울 사무소의 근무자에 한해 지급
③읍·면 총무담당, 동 주무담당에게도 직책급여업무추진비 지급대상에 포함 - 월 5만원 지급	○ 자치단체 직제상 공식조직에 한하여 지급
④업무추진비로 분류된 직책급여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를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변경	○ 국가 분류체계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가의 분류체계 변동시 반영
⑤예비군지휘관에게도 직책급여업무추진비 지급 - 중대장 : 월 135천원 대대장 : 월 270천원 연대장 : 월 306천원	○ 경상예산 역제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동결
⑥도 농업기술원 국장급 직책급여업무추진비 상향조정 - 4급보조기관(월 315천원) → 4급기관장(월 360천원)수준	○ 도 농업기술원국장(4급상당)의 기준액은 4급 사업소장의 기준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의 국장급과 동일한 기준액적용은 불합리(4급사업소장 연 3백만원, 시·도의 3~4급 국장 연 6백만원)

의 건 수 령 내 용	검 토 및 조 치 사 항
4.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련	
①광역시 차량등록소 세무직공무원에게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 지급대상범위조정 : 사업소의 경우『실·과』→『팀』기준	○현행 지급대상인『실·과』체제 유지
②시·군·구의 투자관리(심사) 담당공무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에 포함	○현행 지급대상인『실·과』단위를 유지하되 기 지급 대상업무의 기능조정으로 실과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 가능함
③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을 지침에 명확히 규정 - 6급상당이하 전임계약직 공무원 포함	○시·도의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립보호직원도 포함토록 규정 보완
④결산업무담당공무원에게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의 점진적 축소 방향
⑤수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산활동비, 근무수당 지급을 예산편성지침에 명문화	○관련법령·조례 등에 의거 기지급하고 있음
⑥시·도본청의 5급사무관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포함	○시·도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을 6급이하에서 5급이하로 확대(248개 단체중 136개 단체가 희망)
⑦대민활동비 기준액 상향조정 - 월 30,000 → 50,000원	○공무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상향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나 경상경비 동결 차원에서 현행유지
⑧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확대 - 소방본부의 구조구급업무, 상황실 근무 공무원도 포함	○소방본부, 상황실근무자의 실제 구조구급활동에 참가여부를 검토 지급대상에 포함
⑨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지급 대상 중『업무담당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 삭제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차원에서 현행유지
5.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	
①단체별로 공무원 및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도액을 직장동호인경비에 지원토록 지침에 근거마련	○정원가산금은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집행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6. 지방의회경비 관련	
①의정활동수행 협조자에게도 선물증정가능토록 집행기준 완화 - 선물은 현행지침상 외빈 등에만 증정	○선물지급대상자를『의정활동수행 협조자』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음

의 건 수 량 내 용	검 토 및 조 치 사 항
②지방의회의원 해외여행 예외인정범위 확대 - 통상추진,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 등 예외인정에 포함	○지방의원의 방만한 해외여행에 따른 사회적 여론 및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설정 ○따라서 예외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 기준제시 자체가 무의미하게 됨 ○다만 지방의회의원 해외여행 예산편성기준은 소관부서와 협조 개선해 나갈 계획임
③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일반특위 위원장에게도 의장단활동비 지급	○지방자치법에 의장, 부의장, 위원회만 구성하도록 규정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법정조직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에 포함관란
④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별도의 의정 운영공통경비 지급	○특별위원회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을 운영시 예산의 과다소요 및 당초 기준액의 의미가 상실됨
7. 사회단체 보조 관련	
①체육회 지원기준 2→3단계로 조정 - 인구30만 이상 : 12,100천원 인구30만미만~15만이상 : 8,000천원 인구 15만미만 : 4,800천원	○기초단체의 기준액이 현행 인구 30만이상(연 12,100천원), 30만미만(연 4,800천원)의 간격의 격차가 심하므로 인구 30만미만~15만이 상(연8백만원) 기준을 추가설정하고 15만미만(연48백만원)으로 인구수를 하향시켜 수혜 폭을 확대
②도청소재지 시단위 체육회에 별도 지원 기준 마련(연 12→100백만원 지원)	
③정액보조단체가 2개 시·도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시·도수로 나누어 분담토록 한 규정 폐지 - 자치단체별로 기준액 한도내에서 예산 편성	○정액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자치단체 수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 다른 정액보조단체와 지원규모의 균형상실
④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 규정삭제	○정액보조단체의 의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임의보조금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함이 타당함
⑤4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 등) 정액보조금을 회원수에 의거 차등지원	○자치단체가 기준액 범위내에서 단체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액 자율결정 가능
⑥일반구 임의보조금을 시단위에 통합계상	○일반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업무의 적시성·현지성 보장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운영함이 바람직함
⑦임의보조단체보조금 기준액을 50%상향 조정	○임의보조단체중 기준액 이외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단체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준액 인상의 실익이 크지 않음

의 건 수 량 내 용	검 토 및 조 치 사 항
8. 교육강사·시험수당·회의참석수당 관련	
① 교육강사수당 단가 자율화 (기준단가폐지)	○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운영하되, 경비의 급격한 인상 등 역제를 위 해 필요시 예산편성지침기준 적용
② 시민교육기관에 교양교육강사를 기타강 사에서 일반강사로 조정	
③ 시험수당(문제출제, 문제선정 등) 단가자 율화(기준단가 자율결정)	○ 출제비의 경우 기준액을 적용함에 따라 시험 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여 자 체적용할 수 있음
④ 통·리장 회의참석수당 인상 - 현행 월10,000원 → 50,000원으로 인상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통·리장을 무보수 명예 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지자체가 반대하는 점을 감안 당분간 현행대 로 운영하되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로의 기능전환 확대추진시 재검토
9. 지침에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기준설정 제시	○ 상용인부의 고용목적, 직무의 내용, 근무여건, 기술자격여부 등이 지자체별로 각각 상이하 고 ○ 지정통계기관에서 직종별로 노임단가를 공표 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자율운 영
10. 세목예산 변경사용시 예산부서 사전협의 제도 폐지(사후통보로 갈음)	○ 예산담당부서가 예산의 배정과 집행결과 결 산서작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목변경내 용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관부 서가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곤란
11. 『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지달폐 지 - 행자부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 의를 거쳐 시달해온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해당 시·도(또는 시·군· 구)에서 지역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자 체결정할 수 있도록 폐지(지자체 이양)	○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하는 점을 감안 당분 간 현행대로 운영하되 ○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전국연합 노동조합연 맹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12. 직원능력개발비 연간 한도액 상향조정 - 현행 150,000원 → 300,000원	○ 직원능력개발비는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만 기준액을 인상조정 하기는 곤란

2. 예산과목구분과 설정분야

의 건 수 량 내 용	검 토 및 조 치 사 항
1. 일용인부임 관련	
① 일용인부임(101-04)세목에 『고용보험료 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206-02)세목에 『인부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내용보완	○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등과 같이 관련법령의 개정등으로 부담비율이 인상되거나 고용보험료와 같이 신설되는 법적부담금등은 예산편성과목이 마땅치 않아 운용에 애로가 있어 과목설정에 반영
② 일용인부(101-04)세목에 『산업시찰경비』 추가	○ 자치단체가 고용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을일 반화하여 지침에 반영하기는 곤란함
③ 여비(202)목에 『일용인부 국내출장여비 규정사항』~근거마련	○ 현행 일용인부임 예산과목에 일용인부에 대하여 여비편성 근거가 마련됨
④ 재료비 (206)목에 『일시사역인부의 피복비지급』~근거마련	○ 사업성인부 작업복 예산편성 근거 명시
2. 일반운영비 관련	
① 일반수용비 설정내용중 『예산서상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기타 소규모적이고 예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신설	○ 사전에 예측되지 않는 경비는 세목의 전용, 예비비 지출 등을 통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임
② 각급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요원이 출제, 채점 등의 경우에도 시험관리비 계상가능하도록 과목설정내용 보완	○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업무가 본연의 업무이며 별도 교재연구수당 지급받고 있어 현행대로 운영 ※ 5급 : 월 6만원, 6급이하 : 월 4만원
③ 일반운영비중 『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 연료비』는 별도의 목 신설	○ 일반운영비 운영의 자치단체 탄력성 확보차원에서 별도 과목설정은 불합리
④ 급량비에서 『과단위 조직결속강화 경비』도 집행가능하도록 보완	○ 급량비는 특근, 야근,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식지원 경비로 사기양양 목적으로 집행 될 수 없음
⑤ 급량비에서 『현장활동 참여자의 급식·간식비 지급』이 가능토록 보완	
3. 여비(202)목에 『회의비』~제목신설	○ 여비는 출장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회의비와는 경비 성격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4. 의회비(205)목의 『의원상해부담금』~제목은 『일반보상금』으로 세목변경 조정	○ 의원상해부담금의 경비집행주체가 집행부임을 감안 연금부담금등(304)과목에 세목 이동
5. 시험연구비(207-03)의 『소모성기계·기구, 약품, 농축등의 구입비』를 재료비(206-01)로 변경	○ 시험연구 등에 부수되는 경비이므로 현행과 같이 운영
6. 일반보상금 관련	
①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1개 세목으로 통합조정	○ 민간실비보상금은 주로 행사에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성격상 기타보상금과 통합운영 곤란

의 건 수 량 내 용	검 토 및 조 치 사 항
②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광복절, 3.1절, 현충일 등 국가호국유공자에 대한 위로 방문경비 지급이 가능토록 과목설정 내용보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경비로 집행 할 수 없음
③ 『민간실비보상금』의 운동부·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별도의 세목(운동복 및 예술단운영경비)으로 신설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예술단·운동부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타직보수에 계상
④ 사전 예측하지 못한 각종행사 경비는 예산부서의 공통예산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편성가능토록 내용보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는 예산전용, 예비비로 조달운영하여야 함
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동원 장비 유류대등 지급이 가능토록 과목설정 내용보완	○이주 및 재해보상금(재해보상금)에 지급기준을 마련
⑥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방행정에 직접적으로 협조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실비보상이 가능토록 과목설정 내용보완	○ 보상금의 포괄적인 지급근거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⑦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각종행사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액 제시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행사내용, 지역여건 등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여야 할 사항
⑧ 『기타보상금』에서 법령·조례외의 『규칙』, 『각종시책추진』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경비 지급이 가능토록 과목설정 내용보완	○각종시책 명목으로 보상금 지급시 보상금지급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규칙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배제되어 불합리
7. 광역시에서 지하철공사에 보조할 수 있는 과목이 없으므로 『공기업경상보조』(309-02) 세목 신설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306), 『출자금』(502) 목에서 지원가능
8. 세세항 분류관련	
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세목의 세세항 재분류 - 현행 경상사업(120)→자체사업(220) 조정	○세세항 분류를 경비의 성질에 따라 명확히 하기 위해 '99지침에서 분류기준을 개선한 것임
② 『공기업자본전출금』, 『출자금』, 『적립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과목의 세세항 재분류 - 현행 기타(420)→보조사업(210), 자체사업(220)조정	

의 건 수 량 내 용	검 토 및 조 치 사 항
9. 출연금(306)의 『기타출연금』(306-02)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기금등의 적립금 편성이 가능토록 과목설정 내용보완	○현행유지
10. 예산과목에 구체적인 예시를 표기 - 자치단체 출연금 : 의료원신축이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출자금 : 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예산과목의 성격에 따라 예시가 가능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강구
11. 지방채 관련	
① 지방채 이차보전금을『보조사업』(210)에서 『지방채상환』(310)으로 세세항분류 변경 - 현행 사업예산(200)→채무상환(300)	○이차보전금(307-06)은 자치단체의 채무상환이 아닌 민간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비로 현행유지
② 『차입금원금』(601)과 『차입금이자』(311)을 동일비목에 계상하여 상호용도로록 신축성부여	○원금은 보전재원(채무상환)성격, 이자는 이전경비(경상예산) 성격임 ○국가의 경우도 별개의 목으로 운영중
③ 『차입금이자』(311) 목을 『차입금원금』(601) 목과 같이 세목신설 -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311-01) - 예금은행 차입금이자(311-02) 등	○차입금이자(311)를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이자(311-01)와 기타 차입금상환이자(311-02)로 구분하여 중복공제의 원활한 처리
④ 국립대학 등에 연구의뢰하는 경우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의 편성으로 집행곤란, 『국가기관에 대한 지원경비』쪽 신설	○예산순계 규모과약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세목중 중복공제되지 않은 공기관 부담금등을 별도 세목(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으로 분리
12. 『민간이전』(307) 목의 『민간경상 보조』설정 내용 보완 - 보조사무 또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단체나 협회, 기관의 운영비(인건비 및 조직·사무실 유지경비 등)를 지원할 수 없는 규정신설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자율운영 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정경비는 예산편성과목구분과 설정에 제한할 수는 없음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등 급기준(정원20인이하 월200천원→15인이하 월200천원, 30인이하 월300천원)을 재조정하였으며 시·도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을 6급이하에서 5급이하로 확대변경하였다. 또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의 합리적 조정의 일환으로 '94년도까지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운영한 『한국자유총연맹』을 부활시켜 시·도에서는 연 36백만원, 시·군·구에서 연 12백만원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시·자치구 체육회의 기준액이 현행 인구 30만이상(연12백만원), 30만미만(연4.8백만원)으로 간격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인구 30만미만~15만이상(연 8백만원)기준을 추가 설정하고 15만미만(연 4.8백만원)으로 인구수를 하향하여 수혜폭을 확대하였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방안으로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소규모 분산투자(Pork Barrel) 억제 및 『先 재원의 조달, 後투자수요 창출』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도모하였으며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 채무상환비율 10%이상 및 예산대비 부채비율 30%이상 대상 단체는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지침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순세제잉여금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토록 의무화 시켰다.

예산과목은 2000년도까지 운영해오던 과목구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환경의 변화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단협의체 등 구성에 따른 세출과목을 과목구조에 반영시켰으며 예산의 통제관리에 있어 중복공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차입금이자, 반환금 등 중복예산과목의 세목을 분리하였고 특히 예산과목 설정내용 중 경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의 구체화로 경비집행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V. 맺는 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종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예산편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을 제약하고 통제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민선단체장 출범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대폭 개선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재정운용 및 주요시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준을 제시하는 비목은 국가와 지방, 그리고 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7개경비에 한하고 그외 경비일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였다.

특히 민선자치이후 선심성·행사성·낭비성 경비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사태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제도적 방안의 강구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해당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내용이 확정되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선심성·행사성·낭비성경비를 강도높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살펴가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기준을 정하는 경비는 계속해서 최소화하고 기구·직제와 관련된 과목구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사용어 해설

● 고령화사회(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된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UN의 기준에 의하면 총인구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를 넘을 경우 고령화 국가로 규정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인구비중이 2000년에 약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의 저하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즉 고령화 비율이 7%에서 14%까지 도달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114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일본의 경우 1970년에 노령인구가 7%였으나 24년후인 1994년에 14%가 되었다고 한다.

- 편 집 실 -